

<h1>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</h1>		결재	사회복지사	센터장	대표
교육일시	2022. 11. 30. (수요일)		교육방법	강의	
교육주제	성폭력예방 및 대처방안	교육장소	도란도란재가복지센터 사무실		
교육강사	이명순	교육대상	사회복지사,요양보호사		
참석인원	이명순외 명	교육시간	09:24 - 19:00		
교육내용	* 성희롱 및 성폭력 - 성희롱 직원 간 또는 수급관련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함 - 성폭력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.언어적.심리적 폭력으로, 강간뿐 아니라 희롱이나 음란전화, 성기노출, 추행 등의 여러 가지 형태를 포함한다.				
	* 성폭력의 유형 - 육체적 성희롱 : 입맞춤이나 포옹, 신체접촉(엉덩이, 가슴),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- 언어적 성희롱 : 음란한 농담,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,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, 희유하는 행위,성적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- 시각적 성희롱 : 사진, 그림, 낙서 음란출판물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- 기타 유형 :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				
	* 대처방안 . 감정적 대응은 삼가고, 단호히 거부의사를 표현한다. . 수급자에게는 거부의사 표시와 시정 요구, 보호자에게도 사정을 말하고 시정요구, 시정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 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해 둬 . 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.				
	[직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례] . 침상을 세워 어르신을 일으켜 앉힐 때 품에 안기거나, 몸을 쓰다는 경우 . 식사 보조를 하는 동안 옆에 앉아 있어 달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. 어르신의 얼굴, 손을 닦거나 로션을 발라줄 때 손을 잡거나 만지는 경우 .목욕 보조 시 성기를 닦아달라고 요구하거나, 자위를 강요하는 경우 . 산책 활동을 할 때 사람이 없는 돌만 있는 어두운 곳으로 이동을 강요하는 경우				
	· 성폭력패해신고 ☎ 1899 - 3075 · 여성긴급상담 ☎ 1366				

|